해사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8. 10. 18.] [대통령령 제29215호, 2018. 10. 2.,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 - 200 - 5821, 5820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44 - 200 - 5373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사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해사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최고 속력이 시속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사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2.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본조신설 2014. 11. 14.]

제2조(외국선박에 대한 적용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46조제2항·제4항, 제47조, 제49조 및 제50조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선박 중 그 선박의 소속 국가 또는 그 소속 국가가 인정하는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심사증서를 갖춘 선박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14.>

제3조(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해사안전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해사안전정책 환경의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선박·해양시설 및 여객·승무원 등의 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4. 수역의 설정, 교통환경 조사 및 사고 위해요소 개선에 관한 사항
5. 선박의 항행 관련 항행보조시설·장비·정보통신체제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해사안전 관련 인력의 양성·수급에 관한 사항
7. 해사안전 지식의 보급 및 문화의 증진에 관한 사항
8. 해사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해사안전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해사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해사안전 관련 제도·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 해사안전 관련 투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13. 부문별·기관별·연차별 사업계획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해사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4조(해사안전시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작성권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기관별 작성권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관별 해사안전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 위반되거나 그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계획의 수정이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별 작성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수정이나 보완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시행계획을 확정한 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기관별 작성권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4조의2(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 대응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해사기구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국제협약 및 관련 규정(이하 "국제협약등"이라 한다)에 따른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국가의 의무 및 책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2.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3.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4. 「국제 만재흘수선 협약」
5.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6.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제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국제해사기구의 규정

② 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협약등에 따른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국가의 의무 및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제협약등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국제협약등에 따라 국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관리 및 해당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해사기구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 10. 2.]

제4조의3(점검계획)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점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협약등의 국내법 반영현황 및 계획 등
2. 국제협약등의 이행과 관련된 인력의 자격, 선발 방법과 권한 및 관련 조직 등
3. 국제협약등의 이행과 관련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등
4. 국제협약등의 이행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
5. 그 밖에 대응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점검계획에 따른 점검 결과 대응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0. 2.]

제5조(보호수역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역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수역의 위치 및 범위를 고시하고 해도(海圖)에 표시하여야 한다. 보호수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보호수역의 범위는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시설 부근 해역의 선박교통량 및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른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정한다.<개정 2014. 11. 14.>

제6조(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의2(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8. 10. 2.]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8. 10. 2.>]

제7조의3(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이하 "안전진단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8. 10. 2.>

[본조신설 2014. 11. 14.]

[제7조의2에서 이동 <2018. 10. 2.>]

제8조(처분기관의 조치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처분기관이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업중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8조의2(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이 별표 2의3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의 결과(이하 "안전진단서"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

② 법 제18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려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의견에 대한 이의의 내용 및 사유
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의견에 대한 수정 의견
3. 제2호에 따른 수정 의견에 대한 타당성 분석 자료

③ 법 제18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제출한 이의의 수용 여부 및 그 타당성 분석 결과
2.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사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 등의 내용

④ 법 제18조의2제8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의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견서를 제출한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의 서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관 등의 장의 안전진단서, 이의신청서, 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1. 14.]

제9조(비용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항행장애물 또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매(公賣)에 의하여 처분한다. 다만, 항행장애물 또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의 가액(價額)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항행장애물 또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 공매할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표시·제거와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10조(해상교통장애행위) ① 법 제34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해상안전 및 해상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또는 윈드서핑을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레저기구나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요트
2. 수상오토바이
3. 수상자전거
4. 스쿠터
5. 수상스키
6. 패러세일링 보트
7. 고무보트
8. 모터보트
9. 조정
10. 잠수장비
11. 카약
12. 카누
13. 호버크래프트
14. 워터슬레드
15. 노보트
16. 서프보드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1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① 법 제34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에의 장애 여부 및 해상교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면 그 허가서를 지녀야 하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제시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제4항에 따라 허가서 제시를 요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5. 12. 15.>

제13조(정선명령·회항명령의 고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은 음성、음향、수기(手旗)、발광(發光)、기류(旗旒) 신호、무선통신 등 해당 선박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15. 12. 15.>

제15조(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야 하는 선박 등) ①법 제4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4. 4. 8., 2016. 12. 30., 2018. 10. 2.>

1.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유류、가스류 및 화학제품류를 운송하는 선박(기선과 밀착된 상태로 결합된 부선을 포함한다)
2.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에 따른 평수(平水)구역 밖을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선이나 구조물을 끌거나 미는 선박
   가. 총톤수가 2천톤 이상이거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부선
   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구조물
   다. 각각의 부선의 총톤수의 합이 2천톤 이상인 2척 이상의 부선
   라. 밀리거나 끌리는 각각의 구조물의 길이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2개 이상의 구조물
   마. 밀리거나 끌리는 부선이나 구조물의 길이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부선과 구조물
3.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준설선(浚渫船)

② 법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제1항제2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14. 4. 8.>

[제목개정 2014. 4. 8.]

제16조(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인원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8조에 따라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정부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인증심사 업무의 범위를 적은 사업계획서
3. 조직 및 업무처리규정
4.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인증심사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대행기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 정부대행기관의 명칭과 주소
2. 대표자의 성명

3. 주된 사무소와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4. 해외사무소의 소재지(해외사무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인증심사 업무의 범위
6. 정부대행기관의 지정 연월일

④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정부대행기관 간에 체결하여야 하는 협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1. 대행업무의 범위
2. 대행기간
3. 그 밖에 인증심사 업무의 대행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8조(정부대행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0. 2.>

1.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7명 이상 확보할 것
3. 1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7개 이상의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각각 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4. 4개 이상의 해외사무소를 확보할 것(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한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 10. 2.>

제19조(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이란 국제해사기구 등에서 채택·시행하고 있는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으로서 대한민국이 체결·비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 11. 14.]

제19조의2(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이란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을 말한다.

1.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고
2. 선박이 충돌·좌초·전복(顚覆)·침몰 등으로 멸실되거나 감항능력(堪航能力)을 상실하여 선박에 대한 수난구호 또는 예인(曳引)작업이 이루어진 사고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유류(油類) 또는 기름이 유출된 사고
   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류: 30킬로리터 이상
   나.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름(가목에 따른 유류는 제외한다): 100킬로리터 이상

[본조신설 2015. 12. 15.]
[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의3으로 이동 <2015. 12. 15.>]

제19조의3(해사안전감독관)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이하 "해사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한다)이 속한 기관에 두는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대상이 되는 선박이나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해사안전감독관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③ 법 제58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법 제5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속한 기관에 두는 해사안전감독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임면한다.<개정 2015. 3. 30.>

④ 해사안전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사고의 예방 및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법 제59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항행정지명령의 집행 및 이행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직무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직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30.>

[본조신설 2014. 11. 14.]

[제19조의2에서 이동 <2015. 12. 15.>]

제20조(이의신청) ①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선박소유자·선급법인(「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정·보완 명령 또는 항행정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20조의2(해양안전의 날 등) ① 법 제97조의3에 따른 해양안전의 날은 매월 1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안전의 날에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나 개인에게 행사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1. 14.]

제21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8호의3은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6호, 제7호 및 제8호의2는 어선(「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제외한다)이나 어선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8., 2014. 11. 14., 2015. 8. 19., 2015. 12. 15.>

1.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에 대한 표시나 조치의 명령 또는 직접 표시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3.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제거 명령 또는 직접 제거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불을 보증하는 서류의 제출 요구
5. 법 제30조에 따른 입항·출항의 거부 또는 국내계류시설 사용의 거부
6. 법 제58조에 따른 지도·감독
7. 법 제59조에 따른 개선명령
8.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8의2. 법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8의3. 법 제110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9. 삭제<2015. 12. 1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27호 및 제28호의3은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24호, 제25호 및 제28호는 어선(「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제외한다)이나 어선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4. 10., 2013. 3. 23., 2014. 4. 8., 2014. 11. 14., 2014. 11. 19., 2015. 3. 30., 2015. 8. 19., 2015. 12. 15.>

1.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수역의 입역 허가에 관한 업무
2. 법 제9조에 따른 보호수역 입역에 관한 업무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로지정제도의 시행
3의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실 통보의 접수 및 고시
4. 법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의2제8항에 따른 의견서의 접수·검토 및 통보에 관한 업무
5.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에 대한 표시나 조치의 명령 또는 직접 표시
6.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7.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제거 명령 또는 직접 제거
8.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불을 보증하는 서류의 제출 요구
9. 법 제30조에 따른 입항·출항의 거부 또는 국내계류시설 사용의 거부
10.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고시
11.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수역 등의 지정 및 운영
1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내수 통항허가
13. 법 제38조에 따른 선박 출항통제의 명령(여객선 및 어선은 제외한다)
13의2. 법 제42조에 따른 해기사면허의 취소·효력정지 요청의 접수
1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행보조시설의 설치·관리·운영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설치 요청의 접수
15. 법 제4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보의 수리
16. 법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초·갱신·중간·임시인증심사(수면비행선박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각각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17. 법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시인증심사
18. 법 제49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에 따른 증서의 발급, 연장 및 효력의 정지(수면비행선박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각각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19. 법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0.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의 수리
21.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
22.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23. 법 제55조에 따른 확인, 필요한 조치 및 그 조치의 해제
23의2.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특별점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보완·항행정지 명령
24. 법 제58조에 따른 지도·감독
25. 법 제59조에 따른 개선명령 및 항행정지명령
25의2. 법 제61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26. 법 제98조제4호에 따른 청문
27.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28. 법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28의2. 법 제110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과태료만 해당한다), 제11호,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28의3. 법 제110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29. 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③ 삭제<2014. 11. 19.>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여객선과 어선에 대한 출항통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4. 11. 19., 2015. 12. 15., 2017. 7. 26.>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협의
2. 법 제13조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 허가사실의 보고, 허가의 정지 및 취소
3.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 요청
4. 법 제98조제1호에 따른 청문
5. 법 제110조제3항제15호, 제15호의2 및 제15호의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 위탁할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제22조(선박 등의 보관 및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선박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보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매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멸실·손상 또는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
2. 폭발물, 가연성의 물건이거나 보건상 유해한 물건 또는 그 밖에 보관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일 때
3. 물건의 가격에 비하여 보관비용이 현저히 많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보관과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2015. 12. 15.>
2.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2015년 1월 1일
3. 제23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12. 9.]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칙 <제29215호,2018. 10.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자,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상교통안전진단에 착수한 경우(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진단대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표 2의3 비고 제1호 후단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개정 2014.11.14.>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제6조 관련)

구분	특정해역의 범위
인천구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7도18분55초, 동경 126도28분48초(남장자서) 2. 북위 37도21분38초, 동경 126도26분29초(해리도) 3. 북위 37도20분04초, 동경 126도20분01초 4. 북위 37도18분58초, 동경 126도17분59초 5. 북위 37도17분52초, 동경 126도16분03초 6. 북위 37도16분40초, 동경 126도14분14초 7. 북위 37도12분33초, 동경 126도11분41초(대금도) 8. 북위 37도11분34초, 동경 126도11분01초(진두타도) 9. 북위 37도09분44초, 동경 126도09분17초 10. 북위 37도09분03초, 동경 126도10분33초 11. 북위 37도11분50초, 동경 126도12분35초(동백도) 12. 북위 37도15분59초, 동경 126도15분17초 13. 북위 37도19분08초, 동경 126도20분34초 14. 북위 37도20분07초, 동경 126도26분47초 15. 북위 37도16분48초, 동경 126도23분59초 16. 북위 37도14분26초, 동경 126도23분59초(서어벌) 17. 북위 37도12분16초, 동경 126도23분03초(부도) 18. 북위 37도11분10초, 동경 126도22분03초(통서) 19. 북위 37도09분04초, 동경 126도19분19초(금도) 20. 북위 37도07분28초, 동경 126도18분13초 21. 북위 37도07분00초, 동경 126도19분53초 22. 북위 37도08분58초, 동경 126도20분53초(부도) 23. 북위 37도09분40초, 동경 126도22분29초(적초) 24. 북위 37도13분24초, 동경 126도25분37초 25. 북위 37도15분41초, 동경 126도25분41초 26. 북위 37도16분28초, 동경 126도25분59초 27. 북위 37도18분30초, 동경 126도27분31초 28. 북위 37도18분55초, 동경 126도28분48초(남장자서)

부산구역	오륙도와 생도를 잇는 항계선과 오륙도 등대(북위35도05분27초, 동경129도07분38초)로부터 043도선 및 생도(북위35도02분13초, 동경129도05분36초)로부터 198도선이 북위35도03분59초, 동경129도07분52초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6.0마일 원호(圓弧)와 이루는 해역
울산구역	북위 35도24분37초, 동경 129도27분52초를 중심으로 반지름 6.0마일의 원호 및 울산항 항계선이 이루는 해역
포항구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6도07분16초, 동경 129도28분24초 2. 북위 36도07분16초, 동경 129도29분45초 3. 북위 36도03분21초, 동경 129도29분45초 4. 북위 36도06분33초, 동경 129도33분32초 5. 북위 36도04분36초, 동경 129도36분05초 6. 북위 36도00분11초, 동경 129도36분47초 7. 북위 36도00분11초, 동경 129도43분52초 8. 북위 36도19분11초, 동경 129도43분52초 9. 북위 36도19분11초, 동경 129도27분04초 10. 북위 36도07분16초, 동경 129도28분24초
여수구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50분23초, 동경 127도46분52초 2. 북위 34도43분15초, 동경 127도49분13초 3. 북위 34도40분18초, 동경 127도54분40초 4. 북위 34도35분41초, 동경 127도55분22초 5. 북위 34도35분41초, 동경 127도59분52초 6. 북위 34도39분47초, 동경 127도59분40초 7. 북위 34도43분05초, 동경 127도53분22초 8. 북위 34도43분16초, 동경 127도51분34초 9. 북위 34도44분01초, 동경 127도50분34초 10. 북위 34도44분57초, 동경 127도49분58초 11. 북위 34도46분13초, 동경 127도49분55초 12. 북위 34도50분53초, 동경 127도48분22초 13. 북위 34도50분23초, 동경 127도46분52초

[별표 2] <개정 2015.12.15.>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제7조 관련)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6도38분58초, 동경 126도17분53초
2. 북위 36도38분58초, 동경 126도00분23초(옹도)
3. 북위 36도13분41초, 동경 125도57분23초(황도)
4. 북위 36도07분29초, 동경 125도57분59초(어청도)
5. 북위 35도39분29초, 동경 126도05분59초(상왕등도)
6. 북위 35도20분11초, 동경 125도59분05초(칭도)
7. 북위 35도12분41초, 동경 125도53분53초(소비치도)
8. 북위 34도47분11초, 동경 125도46분53초(칠발도)
9. 북위 34도37분11초, 동경 125도47분53초(우이도)
10. 북위 34도14분41초, 동경 125도53분53초(서거차도)
11. 북위 34도14분41초, 동경 125도55분41초(동거차도)
12. 북위 34도05분48초, 동경 126도36분11초(자개도)
13. 북위 34도10분12초, 동경 127도21분23초(역만도)
14. 북위 34도14분30초, 동경 127도32분04초(대두역서)
15. 북위 34도24분47초, 동경 127도54분10초(작도)
16. 북위 34도29분47초, 동경 128도04분52초(세존도)
17. 북위 34도29분47초, 동경 128도28분28초(고암)
18. 북위 34도40분11초, 동경 128도46분28초(남여도)
19. 북위 35도00분11초, 동경 129도07분52초
20. 북위 35도23분23초, 동경 129도28분32초
21. 북위 36도00분11초, 동경 129도38분52초
22. 북위 36도07분11초, 동경 129도35분52초
23. 북위 36도11분11초, 동경 129도27분52초
24. 북위 36도30분11초, 동경 129도30분52초
25. 북위 36도46분11초, 동경 129도31분52초
26. 북위 37도03분11초, 동경 129도28분52초
27. 북위 37도14분10초, 동경 129도24분52초
28. 북위 37도41분10초, 동경 129도06분52초
29. 북위 37도41분10초, 동경 129도02분52초

[별표 2의2] <신설 2018. 10. 2.>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제7조의2 관련)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6도00분11.0초 동경 129도34분29.0초
2. 북위 36도00분11.0초 동경 129도47분48.5초
3. 북위 35도29분60.0초 동경 129도39분14.9초
4. 북위 35도22분21.1초 동경 129도44분24.6초
5. 북위 35도15분10.9초 동경 129도39분44.5초
6. 북위 35도15분10.9초 동경 129도32분48.9초
7. 북위 34도53분58.3초 동경 129도14분28.8초
8. 북위 34도33분16.7초 동경 128도51분36.8초
9. 북위 34도23분30.2초 동경 128도34분29.9초
10. 북위 34도21분41.7초 동경 128도31분20.3초
11. 북위 34도21분41.7초 동경 128도06분41.5초
12. 북위 34도06분53.4초 동경 127도35분46.8초
13. 북위 34도02분09.3초 동경 127도23분23.8초
14. 북위 34도01분39.6초 동경 127도18분14.8초
15. 북위 33도49분26.9초 동경 127도18분14.8초
16. 북위 33도48분28.6초 동경 127도07분51.3초
17. 북위 33도45분25.4초 동경 127도15분27.2초
18. 북위 33도34분51.7초 동경 127도22분26.5초
19. 북위 33도24분45.3초 동경 127도21분58.2초
20. 북위 33도14분09.0초 동경 127도16분43.8초
21. 북위 33도03분24.6초 동경 127도06분51.1초
22. 북위 32도59분03.1초 동경 126도56분46.3초
23. 북위 32도54분17.5초 동경 126도48분42.5초
24. 북위 32도53분12.9초 동경 126도36분12.6초
25. 북위 32도51분00.2초 동경 126도31분42.5초
26. 북위 32도46분21.0초 동경 126도16분03.1초
27. 북위 32도50분12.5초 동경 126도01분16.1초
28. 북위 33도10분44.0초 동경 125도45분52.8초
29. 북위 33도20분11.3초 동경 125도44분16.1초

30. 북위 33도31분10.5초 동경 125도48분26.1초
31. 북위 33도42분20.1초 동경 125도59분43.4초
32. 북위 33도47분09.5초 동경 126도23분12.7초
33. 북위 33도54분24.5초 동경 125도34분08.9초
34. 북위 34도32분44.1초 동경 125도23분40.8초
35. 북위 34도49분19.2초 동경 125도22분14.9초
36. 북위 35도12분41.0초 동경 125도29분12.3초
37. 북위 35도12분41.0초 동경 125도39분08.8초
38. 북위 35도18분41.8초 동경 125도40분52.8초
39. 북위 35도26분18.0초 동경 125도46분02.5초
40. 북위 35도39분25.7초 동경 125도50분50.2초
41. 북위 35도49분33.1초 동경 125도49분45.9초
42. 북위 36도07분29.0초 동경 125도42분43.9초
43. 북위 36도07분29.0초 동경 126도35분42.3초

[별표 2의3] <개정 2018. 10. 2.>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제7조의3 관련)

구분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
1. 항로 또는 정박지의 지정·고시 또는 변경	가.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로를 지정·고시하려는 경우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항로 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항로 3)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항로 나. 가목에 따른 항로를 다음의 범위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1) 거대선이 이용하는 항로: 항로의 길이, 중심선의 교각(交角) 또는 폭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2) 그 밖의 항로: 항로의 길이, 중심선의 교각 또는 폭을 20퍼센트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다.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박지를 지정·고시하려는 경우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 2)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정박지 라. 다목에 따른 정박지(정박구역을 포함한다)를 다음의 범위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1) 거대선이 이용하는 정박지: 정박지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2) 그 밖의 정박지: 정박지의 면적을 20퍼센트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2.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	가.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등을 설정·지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수역의 해도에 표시된 수심이 4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광업법」 제3조제3호의3에 따른 채굴권을 설정하여 광물을 채취하려는 경우 2) 「골재채취법」 제21조의2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 또는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 나. 가목에 해당하는 구역 등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확장하려는 경우
3.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터널·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부설 또는 보수	가.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에 「도로법」 등에 따른 교량을 건설하거나 터널(수심이 변경되거나 해상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부설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수역의 수심이 4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교량(교각을 포함한다)이나 터널의 위치, 교량의 수면상 높이 또는 터널의 수면하 깊이를 변경하려는 보수 다. 이 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항로 또는 정박지(정박구역을 포함한다)를 횡단하는 해월(海越)케이블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수역의 수심이 4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 다목에 해당하는 해월케이블의 위치 또는 수면상 높이 또는 터널의 수면하 깊이를 변경하려는 보수 마.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교량, 교각, 터널, 해월케이블, 선박 계류시설, 방파제·파제제(波除堤)·방조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설치되는 시설물 및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또는 공유수면 매립 수역의 길이가 200미터 이상이거나 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해당 수역의 수심이 4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바. 마목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점용·사용 수역 면적 또는 매립 수역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확장하려는 경우
4.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재개발	가.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 또는 연안항을 새로 지정하려는 경우 나.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또는 무역항의 항만구역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수역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을 지정하려는 경우 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 2)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다. 길이 100미터 이상 선박이 이용하는 계류시설의 건설 라. 다목에 해당하는 계류시설의 변경 1) 거대선이 이용하는 계류시설: 해당 계류시설의 길이 또는 접안능력을 10퍼센트 이상 연장하거나 상향하려는 경우 2) 그 밖의 계류시설: 해당 계류시설의 길이 또는 접안능력을 20퍼센트 이

	상 연장하거나 상향하려는 경우 마. 이 표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항로, 정박지, 계류시설로부터 해당 항로, 정박지, 계류시설을 이용하는 최대 선박의 길이의 3배 안의 수역에 방파제·파제제·방조제를 건설하려는 경우. 다만, 사업을 하려는 수역의 해도에 표시된 수심이 4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마목에 해당하는 방파제·파제제·방조제의 길이 또는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확장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가. 최고 속력이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투입하여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 나. 최고 속력이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투입하여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

비고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이란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1일 평균 4회 이상 통항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 경우 선박의 통항량이나 규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폭풍해일주의보·지진해일주의보·태풍주의보·풍랑주의보 또는 폭풍해일경보·지진해일경보·태풍경보·풍랑경보의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12일 이상의 기간(최근 1년 이내의 계절별로 3일 이상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에 「선박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위치정보를 사용한 교통조사를 실시하여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1일 평균 4회 이상 통항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으로 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 표 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교량의 건설, 위치 변경 또는 수면상 높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인지 여부는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또는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따라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대상수역을 통항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사업이 위 표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대상사업으로 본다.

[별표 3] <개정 2016. 12. 30.>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제16조 관련)

구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이하 "외항선"이라 한다)의 사업장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이하 "내항선"이라 한다)의 사업장
자격기준	경력기준	안전관리책임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1. 2급 항해사,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외항선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2. 외항선 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4급 항해사, 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선박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안전관리자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외항선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교육기준	안전관리책임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16시간 이상 수료한 사람 1. 안전관리체제 수립·운영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법령 2. 조사, 질문, 평가 등 심사기법 및 안전경영의 기술 3.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내부 심사의 이론 및 기법 4. 해운·선박운항의 지식 및 육해상 직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14시간 이상 수료한 사람 1. 안전관리체제 수립·운영 관련 국내법령 2. 조사, 질문, 평가 등 심사기법 및 안전경영의 기술 3.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내부 심사의 이론 및 기법 4. 해운·선박운항의 지식 및 육해상 직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안전관리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14시간 이상 수료한 사람 1. 안전관리체제 수립·운영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법령 2. 조사, 질문, 평가 등 심사기법 및 안전경영의 기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사람 1. 안전관리체제 수립·운영 관련 국내법령 2. 조사, 질문, 평가 등 심사기법 및 안전경영의 기술 3.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내

		3.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내부 심사의 이론 및 기법	부 심사의 이론 및 기법
인원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	1명 이상
	안전관리자	4척 이하: 2척당 1명 이상	8척 이하: 4척당 1명 이상
			9척 이상 15척 이하: 5척당 1명 이상
		5척 이상: 3척당 1명 이상	16척 이상: 6척당 1명 이상

비고

1.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은 위 표에 따른 경력기준 및 교육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위 표의 근무경력에는 1년 이상의 승선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위 표의 교육기준에 따른 교육은 정부대행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4.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
5. 사업장 소속 선박이 1척(내항선은 2척 이하)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경력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6. 하나의 사업장에 외항선과 내항선이 동시에 있는 경우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안전관리책임자: 외항선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안전관리자: 내항선 및 외항선의 자격기준 및 인원을 각각 적용한다.

[별표 4] <개정 2018. 10. 2.>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제18조제2항 관련)

구분	자격기준
1. 심사 경력	인증심사원이 되기 전에 사업장 또는 선박에 대한 4회 이상의 최초인증심사·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사업장 및 선박에 대한 인증심사에 참여한 경력이 각각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학력·유사경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양계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직무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 2) 해운 관련 사업장에서 선박안전관리직무와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나. 대학·전문대학의 공학 또는 자연과학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선박안전관리에 관한 기술 또는 운항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교육 경력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평가 결과 총점의 100분의 70 이상을 취득한 사람 가. 「국제안전관리규약」(「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국제안전관리규약」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및 같은 규약에 따른 용어의 이해: 8시간 나. 해운 관련 법령과 국제해사기구·선박안전기술공단·선급법인 및 해사단체가 발간하는 안내서 등의 이해: 8시간 다. 인증심사에 관한 계획 및 시행에 관한 교육: 8시간 라. 안전관리의 기술적·운영적 측면에 관한 교육: 16시간 마. 해운 및 선박 운항의 기본지식: 40시간

비고

1.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은 위 표에 따른 심사경력, 학력·유사경력 및 교육경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사업장 및 선박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ISO 9000 표준시리즈) 인증심사 업무에 참여한 경력은 심사경력의 인증심사 참여경력으로 본다.

3. 위 표에 따른 교육과 평가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정부대행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4.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를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 표의 교육경력에 따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교육을 면제하고, 마목에 따른 교육시간의 2분의 1을 경감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위 표의 교육경력에 따른 일부 교육을 면제한다.
 가. 「국제안전관리규약」에 따른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또는 품질경영체제(ISO 9000 표준시리즈) 인증심사에 48시간 이상 참여한 사람: 위 표 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교육
 나. 선박검사에 관한 지침 작성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 표 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
 다. 2년 이상의 선박승무경력 또는 선박운항경력이 있는 사람: 위 표 제3호마목에 따른 교육
6. 인증심사원은 최초인증심사·갱신인증심사 및 중간인증심사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3년 단위로 2회 이상의 심사경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심사경력을 유지하지 못한 인증심사원은 위 표 제3호 가목 및 다목을 내용으로 하는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3년 이내에 최초인증심사·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 중 어느 하나에 2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7.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로서 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의 정회원인 법인·기관·단체가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협정이 체결될 당시 해당 법인·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국제안전관리규약」에 따른 심사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은 위 표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4의2] <개정 2016. 12. 30.>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제19조의3제1항 관련)

구 분	자격기준
1. 책임급 해사안전감독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의 사람 가. 1급 항해사나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총톤수 1만톤(여객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3천톤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이상의 선박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나. 1급 항해사나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대형 선단(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 7척 이상으로 이루어진 선단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안전관리책임자로 7년 이상 또는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다.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이하 이 표에서 "선박검사원"이라 한다)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의 정회원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선박검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마.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춘 후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바. 선임급 해사안전감독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2. 선임급 해사안전감독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의 사람 가. 1급 항해사나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나. 1급 항해사나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대형 선단의 안전관리책임자로 2년 이상 또는 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다.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선

	박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에서 선박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마.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춘 후 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해양수산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비고

1. "해사안전 관련 분야"란 선박의 운항(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선박에 승무한 경우를 말한다), 조선, 선박안전관리, 선박검사 및 해양수산행정 등에 관한 업무 분야를 말한다.
2. 유급휴가기간은 경력기간의 산정에 포함한다.
3.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하 "원양어선"이라 한다)에 대해 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책임급 해사안전감독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

1) 위 표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2) 원양어선에 대해 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는 선임급 해사안전감독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3) 원양어선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

나. 선임급 해사안전감독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

1) 위 표 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2) 원양어선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별표 5] <개정 2018. 10.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로지정제도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제1호			
1) 통항로 진행방향 위반		25	50	100
2) 그 밖의 사항 위반		15	30	50
나.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제2호	15	30	50
다. 법 제14조제3항제4호 후단에 따른 유조선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제3호	15	30	50
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2항제1호	250	500	1,000
마. 법 제21조제2항(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법 제110조제3항제4호	25	50	100

다)을 위반하여 양도 또는 합병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바. 법 제22조(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5호	25	50	100
사.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6호	80	160	300
아.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7호	80	160	300
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8호	50	100	200
차.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표시나 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9호	50	100	200
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거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10호	80	160	300
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11호	15	30	50
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12호	50	100	200
하.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스킨다이빙·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13호	25	50	100
거.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14호	25	50	100
너.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15호	25	50	100
더. 법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았거나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청취·응답하지 않은 경우 1)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2)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청취·응답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15호의2		120 50	
러. 법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15호의3	100	200	300
머.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변조·훼손한 경우	법 제110조제1항	500	1,000	2,000
버. 삭제 <2018. 10. 2.>				
서. 삭제 <2018. 10. 2.>				

어. 법 제41조의3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15호의6	50		
저. 법 제106조제17호 외의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게을리했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5호			
1)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게을리한 경우		15	30	50
2)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	100	100
처.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경우	법 제110조제4항	50	100	200
커. 법 제4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17호	10		
터. 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나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18호	100		
퍼.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증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19호	10		
허.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검사·확인·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10조제2항 제2호	250	500	1,000
고. 법 5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거짓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110조제2항 제3호	250	500	1,000
노. 법 제63조를 위반하여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10	20	30
도.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10	20	30
로. 법 제65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15	30	50
모. 법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	법 제110조제3항	15	30	50

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22호			
보. 법 제67조에 따른 좁은 수로 또는 항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25	50	100
소. 법 제68조에 따른 통항분리수역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1) 통항로 진행방향 위반		25	50	100
2) 그 밖의 항법 위반		15	30	50
오. 법 제70조에 따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선이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15	30	50
조. 법 제71조에 따른 다른 선박을 추월할 때 추월선이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15	30	50
초. 법 제72조에 따른 선박이 서로 마주치거나 거의 마주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15	30	50
코. 법 제73조에 따른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15	30	50
토. 법 제74조에 따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선박이 피항선의 동작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15	30	50
포. 법 제75조에 따른 침로 및 속력을 유지하여야 할 선박이 유지선의 동작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10	20	30
호. 법 제76조를 위반하여 항행 중인 선박이 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을 위반하거나, 수상항공기 또는 수면비행선박(법 제76조제7항 단서에 따른 수면에서 항행하는 때는 제외한다)이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10	20	30
구. 법 제77조에 따른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이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15	30	50
누. 법 제78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3호	15	30	50

두. 항행 중인 선박이나 어선·조종불능선 또는 조종제한선 등이 법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3호			
1) 등화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5	30	50
2) 형상물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루. 도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정박선, 얹혀 있는 선박, 수상항공기 또는 수면비행선박이 법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3호			
1) 등화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2) 형상물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무. 법 제91조에 따른 음향신호설비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4호	15	30	50
부. 법 제92조에 따른 신호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4호	10	20	30
수. 법 제93조에 따른 신호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4호	15	30	50
우. 법 제94조에 따른 신호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4호	10	20	30
주. 법 제95조에 따른 신호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4호	10	20	30
추. 법 제96조에 따른 합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10	20	30